

의안번호	2218163
의 퇴 인	이광희의원
회 답 일	2026.8.31.
추 계 번호	26D1988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감사위원회)	-지방의회 소속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¹⁾ 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감사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봄	의무규정
3	안 제11조(감사위원회의 사무기구)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4	안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²⁾ 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출함	의무규정
5	안 제19조(집행부회의)	-집행부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단체장, 집행위원으로 구성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선일 결정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임명함 -집행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집행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집행위원에게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³⁾ 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중 많은 것을 지급함	의무규정
6	안 제24조, 안 제29조 (「주민투표법」의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이 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함 -주민투표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이 적용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음	의무규정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 2)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3)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감사위원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감사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미대상) 개정안은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천위원회 운영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11조(감사위원회의 사무기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 등)	
5	안 제19조(집행부회의)	
6	안 제24조, 안 제29조 (「주민투표법」의 적용 등)	

2. 상세 사유

□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관련(안 제7조 및 안 제11조)

- 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는 안 제24조에 따른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결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될 지방자치단체 수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 선출 관련(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참고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415억원, 시·군·구청장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606억원으로 나타남⁴⁾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 선출은 안 제24조에 따른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결되는 경우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주민투표가 가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본 조항에 따른 재정소요 절감액을 추정하기 곤란함

□ 집행부회의 관련(안 제19조)

- 제정안에 따라 집행부회의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집행위원에게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의정활동비 중 많은 것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참고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5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상 의정활동비는 월 2백만원(연간 24백만원)임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집행부회의의 구성은 안 제24조에 따른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결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주민투표가 가결되어 집행부회의가 구성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제정안은 집행위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주민투표 실시 관련(안 제24조 등)

- 제정안은 본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하여 ①지방의회 동의, ②주민투표실시의 절차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 시행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지방자치단체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다만, 가장 최근 실시된 주민투표의 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등을 토대로 주민투표인수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 및 인구수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민투표 실시비용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 최근에 실시되었던 3건의 주민투표(경남 거창(2019년), 경상북도 군위·의성(2019년), 충남 천안(2020년))의 투표인수와 주민투표 실시비용을 참고할 때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은 5,943원임

[표 1] 주민투표 실시비용

투표일	지역	주민투표명	투표인수*(명)	주민투표 실시비용(천원)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원)
2019.10.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요구서 제출	53,186	430,000	—
2020. 1.21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	70,614	636,000	—
2020. 6.26	충청남도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사업추진 찬반	130,445	445,000	—
합계			254,245	1,511,000	5,943

* 투표인수 = 투표자수(사전투표자, 거소투표자 포함) + 기권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12)」에 따른 시·도별 인구수와 주민투표인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주민투표인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에 따른 전체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 85.7%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이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표 2] 지방자치단체 인구 현황 및 주민투표인수 추정

시·도	시·도 인구수(명, a)	주민투표인수(명, $b=a \times 0.857$)
서울특별시	9,299,548	7,969,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171,148	2,717,674
부산광역시	3,241,600	2,778,051
대구광역시	2,353,032	2,016,548
인천광역시*	3,051,961	2,615,531
대전광역시	1,440,729	1,234,705
울산광역시	1,091,948	935,799
세종특별자치시	391,965	335,914
경기도	13,730,135	11,766,726
강원특별자치도	1,508,500	1,292,785
충청북도	1,596,502	1,368,202
충청남도	2,136,753	1,831,197
전북특별자치도	1,724,856	1,478,202
경상북도	2,506,526	2,148,093
경상남도	3,207,383	2,748,727
제주특별자치도	664,792	569,727
합계	51,117,378	43,807,593

*인천광역시는 2026.7.1. 이후 8구 2군에서 9구 2군으로 개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25.12.31.기준)」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시·도 수준에서 주민투표가 1회 실시되는 것으로 전제할 때, 각 시·도별 주민투표 실시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3] 주민투표 실시비용 추정

시·도	주민투표인수(명, a)	주민투표 실시비용(백만원, $c=a \times b \times 5,943$ 원)
서울특별시	7,969,713	47,3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17,674	16,151
부산광역시	2,778,051	16,510
대구광역시	2,016,548	11,984
인천광역시	2,615,531	15,544
대전광역시	1,234,705	7,338
울산광역시	935,799	5,561
세종특별자치시	335,914	1,996
경기도	11,766,726	69,930
강원특별자치도	1,292,785	7,683
충청북도	1,368,202	8,131
충청남도	1,831,197	10,883
전북특별자치도	1,478,202	8,785
경상북도	2,148,093	12,766
경상남도	2,748,727	16,336
제주특별자치도	569,727	3,386

주. 최근 실시된 3건의 주민투표의 1인당 평균 주민투표 실시비용 5,943원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시·도 및 시·군·구별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예상할 수 없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이 추정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